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26 선고 2020가단510993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모두의법률

담당변호사 배근조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매헌

담당변호사 박승헌

변 론 종 결 2021. 1. 15.

판 결 선 고 2021. 2.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와 C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대한 2020. 2. 25.자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36521 대여금 사건1)의 집행력 있는 판결의

승계집행문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관계

1) 원고는 인삼을 가공하여 홍삼진액 등 건강보조식품의 제조, 판매, 수출입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D은 원고의 대표이사이다.

2) C은 자신의 자금을 원고에게 인삼구매자금으로 투자하거나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이 원고에게 인삼구매자금을 투자하도록 소개하고 그 수익금 또는 소개 수수료 등을 받기로 하였는데, 이를 위하여 C의 고등학교 후배인 F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을 위 투자 등의 통로로 활용하였다.

나. 제1 관련판결의 선고 및 확정

C은 원고와 D을 상대로 G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2016. 7. 4., 2016. 7. 8., 2016. 9. 24., 2016. 9. 26. 각각 이체된 금원 합계 110,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은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한 돈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지급할 것을 구하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36521호), 위 법원은 2018. 6. 5. C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와 D은 연대하여 C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9.부터 2016. 7. 24.까지는 연 24%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부터 2018. 6.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와 D이 항소하였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39876호), 위 법원은 2019. 11. 13. 항소를 기각하였고,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와 D이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20다293043호), 대법원은 2020. 2. 27.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을 선고하여 2020. 3. 6. 위 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위 확정된 판결을 '제1 관련판결'이라 한다).

다.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원고는 G와 사이에 작성한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H 작성 2019년 제150호)에 기하여 G의 C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채권 및 구상금청구채권 중 250,000,000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20타채627호), 위 법원은 2020. 2. 17. 이를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위 전부명령을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 위 결정은 2020. 2. 20. 제3채무자 C에게 송달되었다.

라. C과 피고의 채권양도계약 및 승계집행문 부여

1) C은 2020. 2. 25.경 피고에게 원고 및 D에 대한 제1 관련판결에 기한 판결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였고, 같은 날 원고의 대표이사 D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위 채권양도통지는 그 무렵 D에게 도달하였다.

2) 피고는 그 이후 원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1 관련판결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해 달라고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20. 3. 9. 피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승계집행문을 부여하였다.

마. 전부금 소송의 경과

원고는 2020. 3. 2.경 C을 상대로 이 사건 전부명령에 기하여 전부금 25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는데(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가합100986호), 위 법원은 2020. 10. 7.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압류채권인 G의 C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이하 위 판결을 '제2 관련판결'이라 한다).

[제2 관련판결에서 실시한 이유 중 발췌]

① G이 C에 대하여 손해배상채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G이 C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였거나 채무가 없음에도 돈을 송금하였다는 점 등이 입증되어야 할 것인데, C이 다른 투자자들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존재 여부 및 그 범위를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고, G이 C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며, G이 채무가 없음에도 C에게 돈을 송금하였다는 증거 역시 없다.

② 원고는 G이 C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였다는 근거로 계좌거래내역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E 등 원고에 대한 투자자들은 G을 통하여 원고에게 투자금을 송금하였고, 원고도 위 투자금을 반환할 때 G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E 등 각각의 투자자들 계좌로 금원을 송금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G의 계좌거래내역에 있는 E 등 투자자들에 대한 송금내역 대부분은 원고가 자신이 부담하는 투자금 반환채무를 이행한 것이라고 보일 뿐, 이를 G이 C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근거라고 보기는 어렵다.

③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을 빌린 후 이를 갚았다는 근거로 계좌이체내역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위 계좌이체내역에 의하면, 원고가 G에게 각 송금한 시기는 2016. 6. 2.부터 2017. 1. 6.까지만, 이는 C이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한 시기(2016. 7. 4.부터 2016. 9. 26.)보다 이전의 시점도 있어서 금원의 차용 및 변제 시기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액수도 달라 연관성을 찾을 수 없다. 나아가 위 각 송금한 돈이 이 사건 금원의 변제를 위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G이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C에게 지급하지 않은 이상 원고의 C에 대한 채무 변제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④ 제1 관련판결에서는 C을 대주로 하는 차용증이 작성된 사실 등을 근거로 C이 대여금의 귀속주체인 이 사건 금원의 대주라고 인정하였다. 그러므로 원고의 주장대로 원고가 이 사건 금원에 상당하는 돈을 G을 통하여 다른 투자자들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C이 지급받은 것이 아니므로 이를 C에 대한 변제라고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C이 이중으로 변제받는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 을 제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G은 C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채권 또는 구상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원고는 위 채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위 채권을 이전받았다. 그런데 C은 2020. 2. 25.경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였는바, C과 피고의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되어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피고는 C과의 위 채권양도계약에 기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는바, 승계집행문 부여의 원인이 되는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면 승계집행문 부여도 취소되어야 하고, 위 승계집행문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사해행위 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부

원고가 주장하는 사해행위 취소청구의 피보전채권(이 사건 전부명령에 의하여 원고에게 이전된 G의 C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 또는 구상금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C에 대하여 전부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압류채권의 존재에 대한 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제2 관련판결)이 선고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피보전채권의 존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소결

따라서 원고의 사해행위 취소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C과 원고 사이의 이 사건 채권에 관한 양도계약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됨을 전제로 하는바, 위 가.항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원고의 사해행위 취소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 이를 전제로 청구취지 기재 승계집행문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이 부분 청구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범준

[별지]

목 록

C의 원고 및 D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36521호 대여금 사건에 관한 판
결금채권. 끝.

1) 원고는 2020. 4. 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36521호 사건의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39876호'도 집행권원으로 기재하였으나, 위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된 사실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36521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선택하여 판단하기로 한다.